

# 부 산 지 방 법 원

## 제 3 형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21노3819 명예훼손  
피 고 인 서영자 (\*\*\*\*\*-\*\*\*\*\*),  
주거 부산 사하구 이하 생략  
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 
항 소 인 검사  
검 사 김지아(기소), 김민수(공판)  
변 호 인 변호사 김준형(국선)  
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1. 11. 선고 2021고정224 판결  
판 결 선 고 2022. 12. 16.

### 주 문

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### 이 유

#### 1. 항소이유의 요지(사실오인 및 법리오해)

피고인이 상가 지하 복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피고인이

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, 피해자가 000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, 000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.

그리고 진연과 피해자는 단지 같은 상가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에 불과하여 사적인 비밀을 지켜줄만한 유대관계가 없었고, 피고인이 00에게 미납관리비 용지까지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00000에서의 명예훼손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
## 2. 판단(배척)

가.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(헌법 제27조 제4항,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). 그리고 ‘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’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,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.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,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(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도 11771 판결 등 참조).

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.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

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.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(대법원 2000. 5. 16. 선고 99도5622 판결,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).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,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,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, 행위자·피해자·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, 발언의 내용,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).

나.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‘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’는 이유로,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.

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.

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**3. 결론**

그렇다면,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성기준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민희진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목명균      \_\_\_\_\_